

학교보안관 업무 매뉴얼



서울특별시



제1장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 1

1. 목적	3
2. 업무범위	3
3. 기본적인 근무자세	4
4. 금지행위	5
5. 근무시간 및 방법	6
6. 유니폼 착용 규정	6
7. 출근 및 퇴근	8
8. 학생지도 업무	9
9. 출입 관리	10
10. 취약지역 점검	11
11.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12
12. 근무 중 휴식시간	13
13. 기록 및 보고	14
14. 근무성적 평가 및 활용	14
15.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근무공백 방지	15
16. 기타	15
[참고 1]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6
[참고 2] 학교보안관 시간대별 직무내용	24

제2장 학교폭력 이해 및 대처 요령 / 25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해 27
2. 학교폭력의 유형 31
3. 피해학생의 특징과 징후 34
4. 가해학생의 특징과 징후 36
5. 방관자 39
6.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40
7. 응급상황 초기대응 방법 40
8. 자치위원회 43
9. 분쟁조정 45
10. 예방지도 시 유의사항 47

제3장 관련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 / 49

1. 관련 전문기관 현황 51
2. 관계기관 현황(서울시 교육청) 53
3. 관계기관 현황(서울시지방경찰청) 54



제1장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제1장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1 목적

본 근무지침은 학교보안관이 배치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근무 방법과 요령,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업무범위

학교보안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2.1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 활동
- 2.2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현장 선도활동
- 2.3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 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 2.5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 2.6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 2.7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 2.8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 2.9 위의 각 호와 관련되지 않은 타 업무 지시 금지

3 기본적인 근무자세

학교보안관은 근무에 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춰야 한다.

- 3.1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단정한 용모와 규정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고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3.3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에 진입하는 경우 방어적 자세로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3.4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세로 학교안전 및 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며, 학교운영 규정 등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 금지행위

학교보안관은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1 학교장 또는 학교 관계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 4.2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음주,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 4.3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
- 4.4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
- 4.5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과도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
- 4.6 학생지도 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4.7 종교적 포교 활동, 과외 알선 등 학교보안관의 활동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 4.8 학교보안관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언행
- 4.9 근무시간 중 신문 및 잡지, 서적 등을 구독하거나 휴대전화, TV 등을 장기간 시청하는 행위
- 4.10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학교장이 금지하는 행위

5 근무시간 및 방법

학교보안관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5.1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한다(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만, 학교보안관 동의 시 주 2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 5.2 평일은 학교보안관 2인이 교대근무하며, 오전 근무시간은 07:30~16:00까지, 오후 근무시간은 12:30~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등 종료시간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학교보안관 3인 근무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5.3 토요일은 격주로 1인이 08:00~13:30까지 근무하되, 학교보안관 3인 근무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유니폼 착용 규정

학교보안관은 다음과 같은 유니폼 착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6.1 근무시간 중에는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6.2 학교보안관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및 근무장소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전 승인 없이 유니폼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

- 6.3 유니폼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급된 것 외에 다른 종류의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다른 장식을 부착하거나 소지해서는 아니된다.
- 6.4 유니폼의 착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가. 하 복 : 매년 5월 1일 ~ 9월 30일
 나. 동 복 : 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다. 춘추복 : 그 외의 기간
- 6.5 신규제작 지급된 유니폼은 춘추복, 하복, 동복 및 모자 등으로 유니폼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가. 춘추복 : 점퍼, 바지 각 1매, 셔츠 2매
 나. 하 복 : 바지 2매, 셔츠 반팔, 긴팔 각 1매
 다. 동 복 : 점퍼, 기모바지 각 1매
 라. 기 타 : 하계·동계·우의 모자 각 1개
 우의, 명찰, 벨트 각 1매, 경광봉 2인 1개
- 6.6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유니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유니폼 착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보안관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한다.

7 출근 및 퇴근

- 7.1 학교보안관은 근무시간 개시 전까지 출근을 마쳐야 하며, 출근 즉시 前근무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이상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 7.2 학교보안관은 출근 및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학교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학교 관계자에게 출근사실을 보고 하고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 7.3 퇴근시간은 5항에 규정된 근무조별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후속근무 교대자가 출근이 늦을 경우에는 출근 시까지 대기하다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4 오전 근무조는 전일 근무내용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학교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7.5 월 3회 이상 지각이나 조기퇴근 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8 | 학생지도 업무

학교보안관은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8.1 등·하교 시간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및 교직원들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금품 갈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 8.2 학생 간 또는 외부인에 의한 폭력행위나 폭력시도 의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지하고 학교 관계자 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단, 혼자 힘으로 폭력행위 제지가 곤란하거나 신변이 위험할 경우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 8.3 학생 간 폭력행위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항상 신중한 자세로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8.4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임교사나 학생지도교사 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8.5 학생지도교사 또는 전문심리상담사 등으로부터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협조해야 한다.

9 출입 관리

- 9.1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과 차량에 대하여 출입 목적과 용도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 9.2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에 정당한 출입자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 9.3 외부인에 대한 신원 확인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기가 학교 보안관임을 알린다.

자기소개 요령

☞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9.4 학교 내 출입관리는 학교별 지침에 따르되, 학교안전 및 질서 유지상 출입이 부적절한 잡상인, 음주자, 위험 물품 소지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9.5 학교보안관은 출입을 통제함에 있어서 출입자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고 절도 있는 언행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 9.6 정당한 출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조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폭력이 유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 및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10 | 취약지역 점검

학교보안관은 학교장 또는 학교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된 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점검해야 한다.

- 10.1 학교보안관은 배치 직후 학교장 또는 학교관계자와 협의 하여 취약지역(화장실, 독립 건물 등) 및 이에 대한 점검시간과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 10.2 학교보안관은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허락없이 교실에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 휴식시간 중 복도 점검은 사전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학교보안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11.1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신고 접수

나 현장 출동

다 비상경고 발동

- ▶ 호각 등을 이용하여 비상상황을 주위에 알림

라

학교 관계자에 즉시 알림

바 현장 관찰 및 상황악화 방지

- ▶ 신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주시
- ▶ 폭력 상황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당사자 제지 또는 중재 시도

마 경찰신고

- ▶ 학교 내 처리지침에 따라 112를 통해 신고

사 현장상황 인계

- ▶ 경찰 출동시 비상상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 후 지시 이행

아 상황종료 및 보고

- ▶ 상황 종료 후 근무일지 기록
- ▶ 학교관계자에 보고

12 근무 중 휴식시간

1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을 준수하여 개인별 1시간 이내의 휴게시간을 둔다.

12.2 학교보안관은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식사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학교보안관은 휴게시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13 기록 및 보고

학교보안관이 기록해야 할 문서의 종류와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3.1 출입통제 현황

- 출입자(출입차량 포함)의 신분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다.

13.2 일일 근무일지

- 당일 근무시간별 주요 근무 내용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처리한다.

13.3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문서

- 학교보안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14 근무성적 평가 및 활용

14.1 학교보안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4.2 근무성적 평가 결과, 학교보안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학교 인사 관리규정 및 운영규정 등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5 |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근무공백 방지

- 15.1 본인의 휴가 또는 교육으로 인해 근무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학교장에 1주일 전까지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 15.2 경·조사 발생 등 예상치 못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 이를 보고하고 근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 15.3 사전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무 공백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교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16 | 기 타

- 16.1 본 근무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인사관리 규정 및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한다.
- 16.2 학교 규정에 별도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사회적 관습 등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적용한다.

- 참고 : 1.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2. 학교보안관 시간대별 직무내용 1부.

참고 1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보안관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고”란 학교의 장이 장래에 대하여 학교보안관과의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에게 적용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운영계획과 학교의

장이 수립하는 운영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학교보안관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의무) 모든 학교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직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의 채용절차 및 학교별 배치기준
2. 학교보안관의 복무표준 및 복리지원
3. 학교보안관의 직무평가 방법 및 기준
4. 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5. 그 밖에 학교보안관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보안관 운영비용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보안관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학교보안관의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제한 대상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6.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학교보안관의 역할)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제9조(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조치사항 등) ① 학교보안관은 활동 중에 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안관은 학생의 생활지도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경고, 훈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제10조(채용) ① 학교보안관은 학교의 장이 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학교보안관으로 채용한다.

③ 학교보안관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장은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보안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보안관의 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채용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①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은 채용일 현재 55세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보안관의 근무상한연령은 70세이며,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보안관을 해고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5.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보안관의 해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등) ①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에는 직무교육과 함께 운영계획,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평가서 작성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학교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결과
2. 학교보안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별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하고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학교보안관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6571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94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7년 12월 31일, 1944년 1월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8년 12월 31일, 1947년 1월 1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9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참고 2 학교보안관 시간대별 직무내용

학교보안관 A		학교보안관 B	
근무 시간	직무내용 (해야할 일)	근무 시간	직무내용 (해야할 일)
07:30~ 08:00	- 교내·외 순찰 ▶ 학교 주변, 운동장, 복도 등 취약지역		
08:00~ 09:00	- 등교시간 교문지도 ▶ 교문 앞 안전 및 교통 지도		
09:00~ 12:00	- 교문 출입자 통제 ▶ 출입자 확인 및 기록, 방문증 배부 및 회수		
12:00~ 13:30	- 저학년 하교시간 교문지도 ▶ 교문 앞 안전 및 교통 지도	12:30~ 14:00	- 교문 출입자 통제 ▶ 출입자 확인 및 기록, 방문증 배부 및 회수
13:30~ 15:30	- 중식 및 휴게시간 - 교문 출입자 통제 등 ▶ 출입자 확인, 방문증 배부 및 회수	14:00~ 14:30	- 교내·외 순찰 ▶ 학교 주변, 운동장, 복도 등 취약지역
15:30~ 16:00	- 교내·외 순찰 및 업무 인계 ▶ 학교 주변, 운동장, 복도 등 취약지역	14:30~ 16:00	- 고학년 하교시간 교문지도 ▶ 교문 앞 안전 및 교통 지도
		16:00~ 17:00	- 교문 출입자 통제 ▶ 출입자 확인 및 기록, 방문증 배부 및 회수
		17:00~ 18:00	- 석식 및 휴게시간
		18:00~ 21:00	- 교문 출입자 통제 - 돌봄교실 참여 학생 하교 지도

※ 위 사항은 개별 학교의 교문 수, 주민복합시설 및 돌봄교실 운영 여부 등 반영하여
탄력적 적용



제2장

학교폭력 이해 및 대처 요령



제2장 학교폭력 이해 및 대처 요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해

[시행 2016. 6. 23.][법률 제13576호, 2015. 12. 22., 일부개정]

가. 목적(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특징

학교라는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방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규정은 학교조직을 둘러싸고 발생한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방법상의 선도조치나 징계 조치들은 일반국민보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법적 성격을 갖는다.

다. 주요내용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제7조 및 8조)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제6조),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은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와 연계하여, 기본계획에 따르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제14조)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며,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기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또한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12조)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중등 및 고등학교 등에 교사 및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자격을 가지는 자, 의사 자격 소지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며,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필요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제20조의5)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 학교폭력의 유형

가. 신체적 폭행

신체적 폭력은 학생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꼬집고 목 조르는 행위, 손가락 뒤로 꺾기 등과 같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폭력이 있고, 각종 칼, 컴퍼스, 몽둥이, 파이프 등 물건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는 형태이며, 구체적으로는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는 행동, 물건·흉기 등을 이용해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나. 금품갈취, 강제적 심부름

금품갈취는 물질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갈이나 범죄로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구체적으로는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행동이 이에 해당되며 최근에는 금품갈취의 새로운 유형으로 “빵셔틀”이라고 하여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

다. 정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은 보통 괴롭힘으로 불리는데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놀림, 욕설, 단점 등을 말하며 괴롭히는 폭력을 말하는데 적어도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 영향이 강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겁주고 무시하기, 따돌리거나 거부하기 등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며 상대방 스스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자아개념이 위축 되도록 의도되는 경우이다.

라. 따돌림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잘난 척 한다거나, 고자질 한다거나 등 주로 집단 내 비공식 규범의 파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체불구, 비만, 낮은 성적 등 각종 선천적, 후천적 약점을 지닌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며 접촉 자체의 차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상화 되어 있어 증거 포착이 힘들며, 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사실은폐 경향이 높아 적발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동,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마. 사이버 폭력

최근 들어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중 가장 급증하고 있는 유형이다. 아바타를 무차별 공격하거나 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도,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비난 등이며 주로 심리적·물리적 고통을 함께 수반하는 특징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사이버세계는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으로 느껴 현실과 혼동하고 있다는 점과 아바타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분신처럼 여겨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피해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은 또 다른 학교폭력의 형태로 문제되고 있다.

바. 성폭력

사이버상의 폭력과 함께 급증하는 폭력유형으로 말 그대로 이성 간에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하는 행동이 있다. 이러한 강간은 중·고등학생에게 많이 나타나 있으며 성인 성폭력과 다르게 “집단 성폭력 피해”가 눈에 띄게 높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유형은 공공장소에서 이성에게 몸을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척 몸을 더듬는 행동, 동성 간에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는 등의 장난을 빙자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등이 학교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놀림, 성기 비하 등 욕설을 하는 것과 음란물 자료를 강제로 보게 하는 행위 등이 학생들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3 피해학생의 특징과 징후

가. 피해학생의 특징

1) 수동적 피해자

수동적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집단에 속하는데,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수동적 피해자들은 친구가 적고, 외롭고, 슬픔에 잠겨 있으며 새로운 상황이 오면 매우 신경이 예민해지고 낮설어한다. 가해자들은 이런 취약성을 탐지하는 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이러한 특징의 학생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2) 도발적 피해자

도발적 피해자는 성내고 싸우는 등 주로 부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행동을 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동급생들의 사회적 거절이나 분노, 적대감 등을 끌어내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쉴 새 없이 행동하여 수업을 방해한다. 가해자의 특징처럼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공격적이고, 반항적 행동을 하거나 참을성이 낮은 모습을 보이거나, 수동적 피해자의 특징처럼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느끼거나, 낮은 자존감을 보이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기도 한다.

나. ‘왕따’와 ‘집단괴롭힘’ 징후

1) 학부모가 발견하는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고 자주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꺼려한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못한다.
-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 사달라고 한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한다.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는 시간이 늦어진다.
-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다.

2) 교사가 발견하는 징후

- 수업시간에 특정학생에 대한 야유나 험담이 많이 나돈다.

- 잘못했을 때 놀리거나 비웃거나 한다.
- 특정 학생을 향해 다수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낯새가 있다.
-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된다.
- 주변학생들한테 험담을 들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 자주 엎드려 있고, 혼자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 안색이 안 좋고,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
- 자주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결석을 한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특별한 불일 없이 교무실이나 상담실 주위를 배회한다.

4 가해학생의 특징과 징후

가. 가해학생의 특징

1) 적극적 가해자

가해자 중 제일 많다. 체격이 좋고 충동적이며 쉽게 흥분하고 호전적이며 겁 없고 위압적이며 대담하고 피해자의 감정에 무심한 아이들이 속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적인 인성을 가졌고 힘이나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 기도 하며 주위의 실존하는 것을 경멸하거나 적대한다. 가해자가 사교술이 부족하다는 일반적 생각과 달리, 실제로 가해자들은 사회 흐름을 읽고 투시하는데 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그

능력을 사회 친화적-예컨대 다른 이와 공감하기-로 쓰지 않고, 동급생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데 쓸 뿐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성숙해 질수록 가해학생들의 행동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 소극적 가해자

적극적 가해자와 달리, 불안감을 느낀다. 적극적 가해자보다 인기가 없고 자부심이 떨어지며 붙임성이 부족하고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또한 학교생활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예컨대 폭력적 기질이나 걱정적 행동을 보여 또래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적극적 가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이 이미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극적 가해자들은 암전한 척한다. 소극적 가해자는 표면에 능하면서 강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편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들을 ‘불안해하는 가해자’로 분류한다.

3) 순수 가해자

건장한 아이들로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다른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학교폭력을 활용한다. ‘냉정한 조정자’라고 평가를 받는 순수 가해자들은 전혀 학교폭력에 시달린 적이 없으며, 또래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해 거의 매일 학교에 나온다.

4) 방관자

학교폭력 사실을 직접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 ‘신고 하거나 말려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로서 피해 사실을 모른 척 하며 무언(無言)의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된다.

나. 가해학생의 징후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면서 그 학생이 대답하게 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다.
-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봉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친구나 후배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

-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관련하여 또래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의심이 많으며 공격적이다.
- 절도 및 물건 파손 등의 위반된 행동에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매사에 민감하고 학교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다.
- 언어폭력이나 물리력으로 타인을 통제/쉽게 흥분하고 쉽게 주먹을 휘두른다.
-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타인이 겪는 문제에 무관심하다.
- 타인 행동을 부당하게 악의로 받아들인다.

5 방관자

학생들이 학교폭력 목격시 ‘모른척함’(62.0%), ‘함께 말렸음’(17.1%), ‘선생님께 알림’(9.9%)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27%가 같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해 타인에 대한 관심부족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사이의 개인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7 응급상황 초기대응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유의할 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신속하게 관련 학생들의 안정성과 폭력에 노출된 정도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사안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초기 대응 순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 가해 상황을 말하며 긴급한 도움을 요청했다면 관련자는 우선 학생들의 폭력 상황과 심리적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또 다시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나 긴급적인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병원 및 경찰 등 연계가 필요시 바로 연락해야 한다.

나. 대상별 초기 개입

1) 피해학생

- 피해 학생의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잘못 이송할 경우 척추 및 경추 손상 우려).

2) 가해학생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할수록 가해학생도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지도한다.
- 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불리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발생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 가해학생이 2명 이상이라면 즉시 이들을 격리 보호하여 집단적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건 사실을 조작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다. 초기대응 시, 사안파악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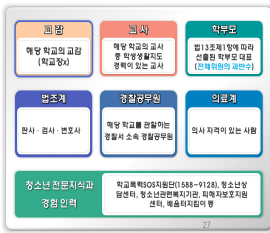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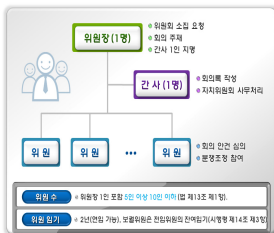
- 피해학생 파악 : 학교, 학년, 성별, 교우관계, 피해자수, 이전 폭력 피해 경험, 특이사항 등
- 가해학생 파악 : 학교, 학년, 성별, 가해자수, 가해의 동기 등
- 사건상황 파악 : 폭력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등), 피해 정도(외상 및 충격 등), 사건의 정황, 원인 파악 등
- 관련학생의 현재 상태 점검(대처능력 및 불안 정도 등)

8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자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되어 상담자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치위원회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의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 요청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자는 위원 섭외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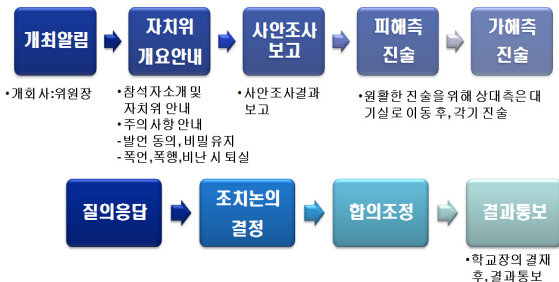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을 위한 사안조사방법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증인의 면담 조사, 사안현장 조사 등을 모두 실시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받는다.
-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학부모,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 조사한 후에 면담조사 일지를 작성한다.
- 학생조사 및 지도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업 시간 이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 교사에게 사전 통보하여 협조를 얻은 후 수업시간에 하도록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



- ① 진행자(학교폭력 책임교사)가 개회를 알린다.
- ② 제일 먼저 자치위원회의 목적, 자치위원 소개, 회의진행절차, 회의 시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 ③ 책임교사가 사건조사서를 보고한다.
- ④ 피해자측의 진술 시간을 준다. 먼저 사건을 진술하고 피해측의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 ⑤ 가해자 측의 진술 시간을 준다. 사건을 진술하고 가해 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 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⑦ 피해 가해 학생 간 치료비 등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조정한다.
- ⑧ 가급적 사건초기에 자치위원회에서 합의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효과적이다.
- ⑨ 피해 가해 측 퇴실 후 위원들끼리 협의를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 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

9 분쟁조정

가. 분쟁조정 개념

학교폭력에서의 분쟁조정은 단순히 피해측과 가해측의 합의를 도와주는 단계가 아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갈등을 넘어 학부모, 학교의 갈등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목표가 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서의 분쟁조정은 피해·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과 전문적 사례를 통한 객관적 시야를 제시해야 하며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피해, 가해, 학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분쟁조정가는 학교폭력과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이며 상담가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익 보다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갈등상황을 견디며 객관적 입장에서 모두의 이익을 조명하는 조정가여야 한다. 중재개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안정을 찾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수 있다.

나. 분쟁조정 과정

학교폭력에 대한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신청 → 분쟁조정 개시 →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 → 분쟁조정 → 분쟁조정 종료 → 분쟁조정 결과처리” 순으로 그 절차가 진행된다.

다. 분쟁조정의 한계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즉 수사권이나 민·형사 사건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치료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생, 가정, 학교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10 | 예방지도 시 유의사항

첫째, 사안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는 삼가 한다.

둘째,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인계할 때에는 확인한 사실만 전달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되는 내용은 보고하지 않는다.

셋째, 학교폭력 중 집단으로 신체폭력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학교장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리고, 피해-가해학생, 가해학생들도 각각 분리하여 보호 하며 객관적인 사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피해학생의 신체피해정도가 심각할수록 의료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를 취하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지도 시 의심되는 부분이나 혼란스러울 시에는 담당교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예의주시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보안관 업무 매뉴얼

제1장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제2장 학교폭력 이해 및 대처 요령

제3장 관련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



제3장

관련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



제3장 관련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



1 관련 전문기관 현황

□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 ▶ 24시간 운영, 상담/수사/치료/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짐
- ▶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www.safe182.go.kr 접속 → 117 학교·여성 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 학교폭력 → 학교폭력·유해환경 신고서 작성 → 등록
- ▶ 핸드폰 모바일 신고 m.safe182.go.kr

□ 한국청소년상담원 『헬프 콜 청소년전화 1388』
(국번없이 1388 / www.cyber1388.kr)

- 1) 신변 위험 → 구조요청
- 2) 고민, 애로사항 → 상담
- 3) 유해환경 → 신고
- 4) 자원봉사 → 참여활동

□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www.jikim.net)**

- 1) 위기상담센터 :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관련 전문 상담 센터로서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내방상담서비스 지원
- 2) 위기지원센터 : 학교폭력 사안해결 도움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로서 위기출동, 자치위원회 자문, 중재개입, 법률자문 등 서비스 지원

□ **청소년 감성·소통 공간 「Wee 센터」(www.wee.go.kr)**

-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등을 상담, 진단, 치료



2 | 관계기관 현황

□ 서울시 교육청

연번	교육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3999-540
1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210-1211~4
		Wee 센터	2233-7883~4
2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905-511-6
		Wee 센터	383-0072
3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165-0211~5
		문래Wee센터	2677-7887
		남부Wee센터	2625-9128
4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499-6981~4
		Wee 센터	949-7887
5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708-6511~4
		Wee 센터	722-7887
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434-4311~8
		Wee 센터	3431-7887
7	강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600-0810~4
		Wee 센터	2694-7887
8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015-3311~4
		Wee 센터	3444-7887, 7889
9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810-8311~6
		관악Wee 센터	884-7887
1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286-3611~6
		마음이랑Wee 센터	1588-7179
		성동광진Wee 센터	2205-3633, 4
11	성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944-9312~7
		청소년상담센터	917-7887

□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번호 182]

	경찰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계	700-2985	
1	서울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396-9348	중구
2	서울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701-4348	종로구
3	서울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096-8348	중구
4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35-8348	서대문구
5	서울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745-0981	종로구
6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198-0673	용산구
7	서울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920-1348	성북구
8	서울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961-4350	동대문구
9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149-6660	마포구
10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118-9348	영등포구
11	서울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286-0348	성동구
12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811-9416	동작구
13	서울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457-0182	광진구
14	서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84-0118	은평구
15	서울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944-4471	강북구
16	서울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801-5325	금천구
17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171-0150	중랑구
18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497-3008	강남구
19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870-0349	관악구

	경찰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20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620-9153	강서구
21	서울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449-7348	강동구
22	서울종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396-7349	성북구
23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840-8348	구로구
24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483-9348	서초구
25	서울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093-8348	양천구
26	서울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402-6348	송파구
27	서울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092-0348	노원구
28	서울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525-5040	서초구
29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50-1348	은평구
30	서울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289-9348	도봉구
31	서울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155-9008	강남구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most of the page width.



memo

Handwriting practice sheet with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Handwriting practice sheet with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